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TIFFANY & CO. 공급업체 행동 강령

Tiffany & Co., Tiffany and Company 및 그 각각의 자회사와 계열사(통칭하여 "Tiffany & Co.", "Tiffany", 또는 "당사" / "우리")는 정직, 청렴, 우수함에 대한 명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공급업체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도 역시 같은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Tiffany는 인권,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관행, 환경 보호, 윤리적 사업 행위에 관한 특정 기준에 부합하고 Tiffany의 약속을 공유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 받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들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칙 및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단지 법률 준수를 넘어 인권, 사업 윤리, 사회적 환경적 책임 증진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들은 사업 및 인권에 대한 유엔의 가이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접촉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윤리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업 거래는 투명하게 수행되고 공급업체의 사업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사업 청렴성 및 기업 책임에 대한 약속을 기술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준수: 공급업체는 현재 시행 중인, 또한 발효되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노동, 건강과 안전, 인권, 환경보호, 부패 및 뇌물수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 및 현지 법률과 다른 점이 있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공급업체는 뇌물수수, 부당 착취, 횡령 또는 사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부패 관행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Tiffany가 모든 부패 또는 뇌물수수 방지 관련법(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위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위반하지도 않을 것임을 단언하고 보증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것의 지불이나 양도를 허락, 약속, 제안,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a) 모든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국영 또는 국유 기업이나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포함) 또는 정당, 정당의 관리, 공직 후보자, 또는 (b) 그런 지불이나 양도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모든 기타 관련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법(통칭하여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든 기타 개인이나 단체.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관련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집행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안: 공급업체는 직원과 계약업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보안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며, 제품이나 지적 재산의 도난, 직원이나 고객의 개인정보에의 무단 접근이나 이들 정보의 분실, 회사 경내 및 회사 외부나 운송 중에 일어나는 제품의 바뀌치기나 손상 같은, 이런 일에 대비한 보호 수단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고용: 공급업체의 모든 직원과 계약업자 및 인력들은 위협이나 강압 없이 자신의 고용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기한부의 강제 노역, 부채를 대신하는 노역, 유죄에 대한 노역 등 강요된 노동력을 고용할 수 없으며,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관행도(예를 들어, 직원에게 모집 커미션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나 여행 문서를 주지 않고 보관하는 것)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란 15세 미만, 또는 의무교육을 마치는 나이 미만, 또는 그 나라에서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나이 미만, 이 중에서 가장 윗 나이 미만인 자를 지칭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그리고/또는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고용하는 각 개인의 생년월일에 대한 정확한 문서를 확보해야 하며, 검토와 검사를 위해 시설에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 직원들은 이들의 동의와 더불어 특별한 사업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이보다 적은 국가에서는 그 해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연속 6일을 일한 후에는 최소 하루의 휴무일을 가져야 합니다.

급여 및 복리후생: 최소한, 공급업체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급여 및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각 급여지불 주기에 해당하는 이해 가능한 급여 내역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내역서에는 근로 일 수 또는 근로 시간, 해당 임금 요율이나 성과급 요율,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공제금의 성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 공급업체는 신체적 처벌,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강압의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에 연루되어도 이를 허용해서도 안 되며, 인종, 종교, 연령, 출신 국가, 성적 성향, 성별, 장애 또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기타 모든 금지된 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결사의 자유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근로자는 응징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한 불만 및 우려를 공급업체 경영진에게 표출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 내 업무: 공급업체는 Tiffany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가 공급업체의 시설 또는 기타 Tiffany가 허가한 장소에서 완료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이런 업무를 Tiffany가 허가하지 않은 장소나 시설에서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Tiffany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작업 또는 작업의 일부에 대해 Tiffany의 명백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리고 하도급 계약업자의 본 강령 준수에 대한 인정과 확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안전 관련 법률, 규정, 산업 표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작업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적절한 프로그램 및 엔지니어링 제어책을 시행하여 작업 관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들 위험 평가는 공급업체의 활동 및 제품에 수반되는 유해물질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기계류 및 이동 장비의 이용; (b) 세척 재료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저장과 취급; (c) 유해 가스, 공중의 미립자, 소음과 온도 수준, 불충분한 조명과 환기에서의 노출; 및/또는 반복적인 긴장성 활동; (d) 개인 보호 장비의 적합성 및 관리; 그리고 (e)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 비상시 행동 계획, 영향을 받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탈출 경로의 접근성 및 신호체계, 비상 조명, 및/또는 소화 장비. 적절한 교육, 절차 통제책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직장의 안전 프로그램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작업장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안전 프로그램 관리를 감독하고, 적합성을 모니터하며, 필요할 때에 시정 조치를 취할 위원회 및/또는 조직의 구성원을 찾아 둘 것을 권고합니다.

환경: 공급업체는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 폐기물의 처분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환경 법률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환경 위험, 중대한 환경 영향 및 환경 성과 개선 기회를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물 사용 및 에너지 소비의 축소가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확인된 환경 위험을 완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제어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석, 금속 및 가공된 완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추가적 필수 요구사항

다이아몬드 보증: 공급업체는 Kimberley 프로세스 인증 및 보증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필요 보증들을 유지하고 수집하며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단언하며,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Tiffany에 송장이 제출된, 완제품 상태의

또는 용도 미정의 모든 다이아몬드가 합법적인 원천으로부터 구입된 것 일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천 보증 협약을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관련 제재를) 준수하고, 유엔 결의를 따르며, 미분쟁 지역의 것임을 동의하고 보증합니다.

분쟁 광물 (금, 탄탈륨, 주석, 텅스텐): 공급업체는 이로써 Tiffany가 지시하는 대로 연례 행사로 또는 Tiffany가 요청하는 다른 시기에, Tiffany의 분쟁 광물 규제 준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충족시킬 것임을 동의하고, 단언하며, 보증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Tiffany에 제공된 정보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필요하거나 부정확해지는 경우, 공급업체는 Tiffany에 이를 신속히 알리고 그 업데이트 정보를 Tiffany에 제공해야 합니다.

유색 보석: 공급업체는 Tiffany에 인도 및/또는 판매되는 모든 보석이 미분쟁 지역에서 나온 것이며, 일반적인 산업 표준에 따라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채굴 및 가공되었음을 보장하고자 합리적 실사를 실시할 것임을 단언하고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보석이 어디에서 커팅되었고 어디로부터 수출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보석을 구입하고 거래하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국제 제재 및 Tiffany 규정과 제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국가 및 국제 법률과 업계의 모범 관행을 준수하면서, 보석의 모든 물리적 특성에 대한 완전하고 전체적인 공개를 (모든 처리 또는 방사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검증 가능한 수출업자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석의 구입 내역서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서류를 보석이 Tiffany에 인도된 날짜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적용 및 준수

위의 필수 요구사항에 기술된 대로 Tiffany의 여러 기대사항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전 운용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해당 현지 언어로 본 행동강령 사본을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과 본 행동강령을 공유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급업체는 하도급 계약업자들과 본 행동강령을 공유하고, 그들이 본 강령을 인정 및 확인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Tiffany 또는 그 대리인은 전술한 표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업체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공급업체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보복당할 위협 없이 시설 관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문은 일정이 미리 정해질 수도 있고 예정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Tiffany는 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되고 인도되는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에 모든 미불 구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향후 구매 계약을 유예하거나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티파니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iffany.com/sustainability](https://www.tiffany.com/sustainability)를 방문하십시오.

© 2017 Tiffany and Company. All rights reserved.